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-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 2015년 7월 10일 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6월 1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17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15년 6월 3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정부조직법」개정(2013.3.23., 2014.11.19.)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 행정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6조 제2항, 제6조 제3항 4호, 5호 중 "국 토해양부"를 "국토교통부"로 개정 ○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부칙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, 제164조

○ 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<u>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</u>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 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 조제1항을 준용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 동의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 사항('13.3.23)¹)을 반영하여 「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」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「지방자치법」관련 규정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<u>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</u> 시·도는 <u>행정자치부장관의</u>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- 후략 - 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<u>규약을 변경</u>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<u>제159조제1</u>항을 준용한다.

다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

○ 현재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에 따라 "수도권교통본부"를²) 설립하여³) 운영하고 있으며.

동 본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2005년 2월 『수 도권교통조합 규약』을 제정한 바 있음

¹⁾ 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, 전부개정

⁻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·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- 중략-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편함(안 제36조·제42조 및 제43조)

²⁾ 설립당시의 명칭은 "수도권교통조합"이었으나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약변경을 통해 2007년 9월 "수도권교통본부"로 명칭을 변경하였음

^{3) 3}개 시도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됨

- 동 동의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으로 국토해양부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된 사항을 『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』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 령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국토교통부의 명칭이 지난 '13.3월에 변경되었고, '수도권교통 본부'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'수도권교통조합 법규집'('13.7월) 에도4) 이미 "국토교통부"와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규약이 변경되어 있음을 볼 때.

서울시가 2년여가 더 지난 시점에서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바, 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

「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」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 ① (생 략)
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
 - 5.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1인
- ④~⑥(생략)

^{4)「}수도권교통조합 법규집」p.6 참조

②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 5인, 인천광역시 3인, 경기도 5인, <u>국토교통</u> 보 2인으로 구성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

의 안 544 번 호

제출년월일 : 2015년 6월 12일

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정부조직법」개정(2013.3.23., 2014.11.19.)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6조 제2항, 제6조 제3항 4호, 5호 중 "국토해양부"를 "국토교통부"로 개정
- 나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부칙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, 제164조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<u>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</u>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향후계획 : 시의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승인요청

마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 (별첨)

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

「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제4호 중 "국토해양부"를 "국토교통부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, 인천광역시의회,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	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	2
하되, 서울특별시 5인, 인천광역시 3인,	
경기도 5인, <u>국토해양부</u> 2인으로 구성	<u>국토교통부</u>
한다.<개정 2009.10.22〉	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	3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국토해양부</u> 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	4. <u>국토교통부</u>
5. <u>국토해양부장관</u> 이 추천하는 교통	5. <u>국토교통부장관</u>
관련 전문가 1인	